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힘내라 대한민국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<b>담 당 자</b>	김 지 응 사무관 (02-2100-2682)	

## 제 목 :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(20.9.15.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)이 추진됩니다.

- ◆ 미공개정보 이용,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됨(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)
  - 동 개정안은 국회(윤관석 정무위원장)와 정부(금융위원회·법무부·검찰) 간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되었으며,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

### 1 개정 배경

- '20.9.15.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\*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(윤관석 의원 대표발의) 되었습니다.
  - \*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①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②시세조종, ③부정거래로 분류되며,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
-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,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·조직화되고 있습니다.
  -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(징역, 벌금)만이 가능한데,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·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,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  -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◆ **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**
- ◆ **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**

### 가.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(§429조의2① 신설)
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(부당이득금액)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### 나. 과징금 부과절차(§429조의2② 신설)
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,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,
-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<sup>i)</sup>검찰과 혐의된 경우 또는 <sup>ii)</sup>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#### <금융위원회(증선위원회)\*의 과징금 부과절차>



\*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,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

-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--

## 다. 벌금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조정 (§429조의2③ 신설)

---

-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(몰수·추징 포함)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---

## 라.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(§429조의2④ 신설)

---

-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,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 ②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
→ 현행 규정에 더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금융위-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

### 3

## 향후절차

-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\*가 예정되어 있으며,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\* 정무위 의결 → 법사위 의결 → 본회의 의결 → 공포 및 시행(공포 후 6개월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포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현행	개정안
<p>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)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	<p>제429조의2(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) ①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,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</li> <li>2.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</li> </ol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3.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

4.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 행위를 한 자

②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사·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·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금융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우

2. 제1호의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

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44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(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)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④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